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단215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사단법인 A
2. B
변 론 종 결 2022. 2. 10.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단법인 A 사이에 2020. 7. 8.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사단법인 A은 소외 C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7. 10. 접수 제294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B 사이에 2020. 11. 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소외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20. 11. 2. 접수 제1190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 을가2, 을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장, 당진시장, D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A이 C으로부터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나 피고 B가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구상금 채권은 C의 증여행위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인 C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증여하거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나. 따라서 C이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사단법인 A에게 증여한 행위와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위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이균부

별지